

## 2026년 세법개정안

### [ 국세기본법 ]

#### 1.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포함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선대리인 신청인 범위</li> <li>- 이의신청인, 심사·심판청구인, 과세전적부 심사 청구인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선대리인 신청대상 확대 (좌동)</li> <li>- 고충민원 신청인(심사·심판청구 등을 청구 기한 내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필요한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li> <li>- 단, 다음은 고충민원 제기 불가(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경우,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또는 벌금,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고발, 이행강제금 심의위원회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 완료된 사항,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li> </ul>

<적용시기> 26.1.1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2.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부고지서 우편송달 방법 (원칙) 등기우편 (예외) 일반우편</li> <li>- 요건 : 고지세액 50만원 미만</li> <li>- 대상 : 1 ~ 3의 납부고지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li> <li>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고지세액의 납부고지서</li> <li>3.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li> </o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우편 송달범위 확대 (원칙) 등기우편 (예외) 일반우편 송달 기준세액 상향 및 대상 추가</li> <li>- 50만원 -&gt; 100만원 미만</li> <li>- 대상 : 1 ~ 4의 납부고지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은 동일</li> <li>4. 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 이후 무(과소)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li> </ol> </li> </ul>

<적용시기> (대상 확대) 26. 1.1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 분부터 적용

(기준세액 상향)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 분부터 적용

3. 권리보호 심의 요청 관련 절차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관련 절차 (보정요구) 심의 요청(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의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 가능 (지연통지) 신청기한(20일)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 등을 통지</li> </ul>

<적용시기> 26.1.1 이후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4. 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

- (대상) -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납부로 고지된 세액  
 - 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후 무(과소)납부로 고지된 세액

<적용시기> 해당 시행령 시행일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 분부터 적용

[ 국세징수법 ]

1.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 마련

현행	개정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납자 실태확인 범위 (실태확인)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종사자로 하여금 실태확인 실시 가능 (확인범위)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체납액 관련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등 (성실 응답 의무) 체납자는 실태확인종사자의 질문, 자료 제출 등의 요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 (실태확인종사자 의무) 실태확인종사자는 실태확인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타인 제공 금지</li> </ul>

<적용시기> 26.1.1 이후 실태확인 실시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법 ]

1.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 (세율)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산세율 상향 (세율) 3 -&gt; 4%</li> </ul>

<적용시기> 26.1.1 이후 가공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2.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관련 예외대상 확대 :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경우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추가

<적용시기> 해당 시행령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 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

1.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보육수당 (대상)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한도) 월 2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 확대 (대상 및 한도 동일) - 자녀 1인당 월 20만원</li> </ul>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육아휴직수당 등 비과세대상 및 한도 확대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휴직수당 등 비과세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li> <li>2.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li> <li>3.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li> </ol> </li> <li>● 육아휴직수당 등 비과세 한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 한도 없음</li> <li>2.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 한도 없음</li> <li>3. 사립학교 사무직원 또는 특례 적용 교직원이 정관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월 150만원</li> </o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과세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 3의 대상은 동일</li> <li>- 4.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이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포함</li> </ul> </li> <li>● 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 2 : 동일</li> <li>- 3. 휴직일 ~ 3개월 : 월 250만원 4개월 ~ 6개월 : 월 200만원 7개월 ~ : 월 160만원</li> </ul> </li> </ul>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적연금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세율</li> <li>- 사망까지 종신계약에 따라 연금 수령 시 : 4%(종신계약시 수령나이별 세율과 4% 중 낮은 세율 적용)</li> <li>● 이연퇴직소득(회사 부담분) 연금수령시 분리과세</li> <li>- 10년 초과 :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 세액의 6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 -&gt; 3%로 인하</li> <li>● 10년 초과 20년 이하 :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60%</li> <li>● 20년 초과 :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50%</li> </ul>

<적용시기> 26.1.1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3. 임목 벌채,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목 벌채, 양도소득 비과세</li> <li>(대상) 조림기간 5년 이상 임지의 임목 벌채, 양도소득</li> <li>(한도) 연 60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과세 한도 확대</li> <li>(대상) 동일</li> <li>(한도) 연 3천만원</li> </ul>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배제 범위</li> <li>-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10년(주식의 경우 1년) 내 양도시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li> <li>- 증여자인 배우자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배제 범위 확대</li> <li>- 증여자인 배우자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되는 경우</li> <li>-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li> </ul>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을 조정

현행	개정안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6.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제 적용 방식 변경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소득과세 시 간접투자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방식 (공제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한계세율을 고려한 비율을 곱한 금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 적용 방식 변경 - 원천징수 시 계산한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li> </ul>

<적용시기> 26.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등 대상 확대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3,00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과세 대상 확대 (월정액 급여) 260만원 이하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3,70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li> </ul>

<적용시기> 해당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8. 종합투자계좌(IMA) 관련 소득구분 규정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당소득 범위 확대 - IMA 운용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된 이익 (IMA : 증권사가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 후 실적에 따른 수익을 고객에 배당하는 상품(만기시 원금 보장))</li> </ul>

<적용시기> 해당 시행령 시행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9.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합리화

현행	개정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관계 아닌 법인에 고가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1. 양도자가 주주 등인 경우로서 양도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 2. 양도자가 주주 등, 임직원, 법인, 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로서 양도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li> </ul>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 법인세법 ]

### 1.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현행	개정안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대상)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 -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기부금 손금인정 확대

현행	개정안
●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특례기부금) 소득금액 X 50% (일반기부금) (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X 10% - 사회적기업의 경우 20%	●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상향 (특례기부금) 동일 (일반기부금) 동일 - 사회적기업의 경우 30%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3. 법인세율 상향 조정

과표	세율
0 ~ 2억원	10%
2~200억원	20%
200 ~ 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4. 가상자산 평가방법 변경

현행	개정안
● 가상자산 평가방법 - 선입선출법	● 평가방법 변경 - 총평균법

<적용시기> 2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5. 해외현지법인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현행	개정안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상채권의 대손 발생 시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 추가</li> <li>-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 및 그 핵심자원의 소재, 부품 생산과 관련하여 해외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li> </ul>

<적용시기> 해당 시행령 시행일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6. 부당행위계산 부인 완화 적용

현행	개정안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제외 대상 추가</li> <li>-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무상·저가 임대</li> </ul>

<적용시기> 해당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7. 연결납세 적용제외 법인에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추가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결납세방식 적용 제외 법인 (모·자법인 제외)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유동화 전문회사,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기업, 톤세제 적용법인 (모법인 제외) 비영리법인, 연결지배를 받는 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추가 (모·자법인 제외) 좌동</li> <li>-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소규모법인 (「법인세법」에 해당하며,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내국법인) (모법인 제외) 좌동</li> </ul>

<적용시기> 해당 시행령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